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7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주철현·김문수·송옥주

이병진 • 조인철 • 이건태

권향엽 · 모경종 · 조계원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상시 독려하고 권유하는 선거정책 및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

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8조의3(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①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을 위하여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 원, 회계책임자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 2.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 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58조의 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8조의3(선거인을 위한 교통편
	의 제공) ①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을 위하여 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
	<u>지 아니하다.</u>
	1.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
	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
	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
	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
	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
	유활동으로 본다.